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840
----------	-----

제출연월일 : 1999. 11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안산시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 환경개선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용도를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 등의 사업비 지원, 민간사회단체등의 환경보전사업 지원, 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전행동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련법령 발췌서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제1항, 제2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99.10.29 ~ '99.11.19 (21일간)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환경개선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 등의 사업비 및 민간사회단체등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3. 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전행동계획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환경보전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3條 (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汚染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 水系別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第 3 節 自然環境의 보전

第24條 (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과 生態系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均衡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5條 削除 <97·8·28>

第 4 節 (第26條 내지 第28條) 削除 <93·6·11>

第 5 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第29條 (紛爭調整) 政府는 環境汚染으로 인한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0條 (被害救濟) 政府는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1條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事業場등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事業場등이 2個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 3 章 法制 및 財政上の 措置

第32條 (法制上の 措置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 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の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6편 환경 제1장 환경보호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국가및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40
----------	-----

발의년월일 : 1999. 12. 4.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외 5인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 및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호 “환경개선 기탁금”을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제3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함.
-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2호중 “연구개발등의 사업비 및 민간사회단체 등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연구개발·학술조사 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 등의 환경 관련사업”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수정함.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제1항 제2호중 “연구개발등의 사업비 및 민간 사회단체 등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연구개발·학술조사 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 등의 환경 관련사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환경개선 기탁금</u> 3. <u>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u> 	<p>제3조(기금의 조성)</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u>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 3. <u>기타 수입금</u>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등의 사업비 및 민간 사회단체등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u> 3. (생략) 4. (생략) <p>②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u>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사업</u>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p>② (원안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③ (생략)</p> <p>④위원은 기획실장, <u>행정지원국장</u>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③ (원안과 같음)</p> <p>④.....<u>도시계획국장</u>.....</p> <p>.....</p> <p>.....</p>